

의안번호	2209025
의 퇴 인	남인순의원
회 답 일	2025. 4. 9.
추계번호	25C14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설립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에 대하여 국가가 재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5억원, 2030년 36억 6,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77억 6,600만원(연평균 35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인건비	925	943	961	979	998	4,806	961
기본경비	987	1,006	1,025	1,045	1,065	5,128	1,026
사업비	1,488	1,517	1,546	1,575	1,606	7,732	1,546
자산취득비	100					100	20
합 계	3,500	3,466	3,532	3,599	3,669	17,766	3,553

주: 단수조정 등에 따라 합계 및 연평균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의5(여성 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 신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전시 등을 수행하고, 여성인권 증진과 세계평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여성인권평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함(제1항)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제4항) 국가는 재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음(제6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3조제1항(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를 확대함 ※ (현행) 제11조제1항제1호 ¹⁾ 에 따른 기념사업 (개정안)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1조의5(여성인권 평화재단의 설립 등) 신설	○	
2	안 제13조제1항(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	- 재단사업 수행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대상 및 재산가액 등에 대한 정보 부존재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수익하게 되는 국공유재산의 대상 및 재산가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근거가 없어 추계에서 제외함
- 국공유 사무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임차할 경우 임차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별도의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 안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회의 수당 및 사업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그 소요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비용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등을 참고하여 산출
- (인건비) ‘재단 직원 수’와 ‘직원 1인당 인건비’를 곱하여 산출
 - 재단의 직원 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직원 규모와 직무를 참고하여 20명으로 함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경우 비상임 이사장 1명, 상임이사인 사무처장 1명, 사무처에 1~6급 직원 31명(정원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사무처 조직은 역사관, 피해지원국, 경영지원국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²⁾와 같이 사료관 또는 역사관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부서(역사관) 인력 12명과 비상임 이사장 1명을 제외하여 산정한

2)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4. 그 밖의 관련 사업

것임

- ‘직원 1인당 인건비’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직원 평균보수³⁾[2025년 예산 기준, 각종 수당 등 포함]에 인건비 상승률(1.9%)⁴⁾을 적용하여 산출

□ (기본경비 및 사업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인건비 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⁵⁾

- 기본경비는 인건비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인건비 대비 사무관리·운영비 비율(2025년도 예산 기준 106.7%)을 곱하여 산출
- 사업비는 인건비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2025년도 예산 기준 160.9%)을 곱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후, 총 인원 수를 곱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는 재단 설립 첫 해인 2026년에 발생하는데, 이는 국회예산정책처(내부자료)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 501만원(2026년 기준)에 총 인원 수(20명)를 곱하여 산출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설립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에 대하여 국가가 재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 35억원, 2030년 36억 6,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77억 6,600만원(연평균 35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3) 2025년 기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직원의 평균보수는 4,540만원임

4) 안 제11조의5제6항에 따라 국가가 재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경우 재단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음.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인건비 상승률은 공무원의 임금 상승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본 추계에서는 안 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 직원의 인건비 상승률로 추계 기간 내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예상)인 1.9%를 적용함

5)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전체 인건비, 기본운영비,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부분에 한정하여 해당 비율을 적용함

[표 2]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인건비	925	943	961	979	998	4,806	961
기본경비	987	1,006	1,025	1,045	1,065	5,128	1,026
사업비	1,488	1,517	1,546	1,575	1,606	7,732	1,546
자산취득비	100					100	20
합 계	3,500	3,466	3,532	3,599	3,669	17,766	3,553

주: 단수조정 등에 따라 합계 및 연평균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